



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 추진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 간 과열경쟁 및 불공정 영업행위 차단을 위하여 2010년 12월 20일 발표된 ‘퇴직연금 활성화 및 공정경쟁 방안’을 기초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.

● 금융당국은 원리금 보장상품의 금리 과열 경쟁 및 고객 차별, 특별이익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,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강요, 대규모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이용한 과도한 금리 및 특별이익 요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함.

■ 동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, 공시 강화,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됨.

●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의 과도한 편입으로 인한 고금리 과열 경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%로 제한함.

- 2011년 6월 말 신탁계약 원리금 보장상품 중 자사 상품 비중은 은행이 99.8%, 증권이 43.2%로 나타난 가운데, 보험은 특성상 보험상품으로 판매되나 실제로는 국·공채, 타사예금, MMF 등으로 운용되어 자사 상품이 존재하지 않음.

● 적립금 운용수익률 공시의 경우 총 적립금 대비 평균 수익률을 일괄 산출하여 공시하던 것을 원리금 보장상품과 비원리금 보장상품을 구분한 후 평균 수익률뿐만 아니라 최고 및 최저 수익률을 추가 공시하도록 세분화함.

● 현행 공시주기가 매년 말로 되어 있어 사업자 수익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분기 또는 매월로 공시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공시정보의 시의성을 제고함.

● 비용 부담, 유·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,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다른 거래 중단, 거래연장 거부, 새로운 거래기회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행위를 계약체결 강요행위로 규정함.

(퇴직연금시장 감독규정 개정 추진, 금감원, 8/4)